

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

년 징 제 호

년 월 일

수 신 :

제 목 :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

1. 귀하에 대한 가납벌과금을 오는 월 일까지 불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(국고수납 대리점)에 납부하실 것을 「군사법원법」 제391조제3항 및 「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」 제3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.
 2. 만일 위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.
- ※ 귀하가 가납벌과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○○○검찰부에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가납벌과금은 「군사법원법」 제391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결의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입니다.

성 명	
생년월일	
납부기한	
선고법원	
가납벌과금	

안 내 말 씬

- 벌과금은 첨부된 납입고지서로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(은행, 농협, 수협, 우체국)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기관의 수납 인(印) 및 취급자 인(印)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.
-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면 당 ○○○(☎02)000-000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: 납입고지서

○○○ 검 찰 부

군검사

(서명 또는 인)